

6)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

- 가) 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9조)
- 나) 신청인 스스로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
-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 결정 전 철회 가능(신청인이 명예퇴직신청 철회를 요청할 시에는 철회원을 첨부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)

7)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[별표 1] 제4호조 관련)

<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>

|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| 산정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퇴직 당시(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◦ 월봉급(본봉)액(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)의 반액 × 정년잔여월수 |
| 2.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퇴직 당시 월봉급(본봉)액(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)의 반액 × {60 + (정년잔여월수-60)/2} |
| 3. 10년 초과인 사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(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) |

비고 :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※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

-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 부과대상(「소득세법」 제4조)이므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에 같은 법에 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

8) 공무원 본인 사망(뇌사) 시 명예퇴직 심사 대상 구분

가) 인정

- ① 공무원 본인 사망 전에 공무원 본인의 자필로 기재된 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
- ② 공무원 본인의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: 사망 전에 본인의 직접적 의사(육성녹음 등) 입증 자료를 첨부, 본인과 대리인 명의로 소속기관에 제출

나) 제외

- ① 공무원 사망 후 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
- ② 공무원 사망 전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본인의 자필 기재 또는 직접적 의사 입증 없이 배우자 등이 대필 또는 대리인 명의로 제출(본인의 직접적 신청 입증 불가)